

## 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

2021년 7월호

### 1. 법률

- 가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- 나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
### 2. 금융위원회 · 금융감독원 규정

- 가. 금융투자업규정

### 3. 한국거래소 규정

- 가.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
- 나.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
- 다. 장외파생상품시장 청산업무규정
- 라. 장외파생상품시장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
- 마.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
- 바. 금리 · 통화 · 일반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

### 4. 금융투자협회 규정

- 가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
- 나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
- 다.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
- 라.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
- 마.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
- 바.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

## 1. 법률

- 가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(시세조종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)
- 나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(대주주에 대한 금융투자업자의 신용공여 허용사유 정비 등)

## 1. 법률\*

### 가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(2021/6/8 개정 · 2021/12/9 시행)

#### 1) 개정 이유

-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, 금융투자업 인가단위 업무 추가 시에는 업무단위 추가등록을 통해 완화된 심사요건을 적용하기 위함

#### 2) 주요 내용

##### □ 알선·중개행위 금지(제11조의2 및 제444조 제1호의2 신설)

- 계좌대여 알선·중개 금지원칙을 법률에 명확히 밝히고,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
  - 현행법에 계좌대여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계좌대여를 알선 또는 중개하는 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처벌 근거가 부재한바, 계좌대여 알선·중개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관련 범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필요성에 의함

##### □ 인가요건 등의 유지 및 투자매매업 등의 업무 단위 추가 및 등록(제15조, 제16조의2 신설 등)

- 현행 금융투자업 인가체계가 복잡하고 업무추가에 따른 절차상 부담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
-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기존의 투자매매업자·투자중개업자가 같은 금융투자업의 종류에 속하는 금융투자상품을 구성요소로 하여 인가단위 업무를 추가할 경우 등록제를 적용하도록 함
  - 동질성이 있는 영업 또는 상품군의 범위는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
- 업무단위 추가등록 시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 및 사업계획 요건에 대한 심사를 면제
  - (인가요건) ①법인격, ②자기자본, ③사업계획, ④ 인적·물적 설비, ⑤임원 적격성, ⑥대주주의 사회적신용, ⑦본인의 사회적신용, ⑧이해상충방지체계

\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법제처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됨

## □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인가에 관한 특례(제16조의3 신설)

-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조직형태를 변경하여 기존 영업을 동일하게 영위하는 경우 단순한 형태변경임을 감안하여 업무추가 등록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심사요건 일부를 면제 또는 완화
  - 외국계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 시 신규인가 요건 중 사업계획의 타당성·건전성, 인적·물적 설비, 대주주 요건에 대한 심사를 면제·완화

## □ 투자자예탁금 반환절차 변경(제74조)

- 예치금융투자업자의 파산 또는 인가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현재 예치금융투자업자가 예치기관에 예치·신탁한 투자자예탁금을 인출하여 투자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, 이를 예치기관이 투자자의 청구에 따라 투자자예탁금을 투자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함

## □ 일반사무관리회사(제254조 제1항)

- 투자회사형 집합투자기구뿐 아니라 모든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의 업무를 위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하여 등록을 의무화
- 자본시장법상 규율을 받게 함으로써 집합투자기구 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
  - 직무관련 정보이용금지, 자료 기록·유지의무 등 영업규제가 적용됨

## □ 금융기관의 단기금융업무(제360조 제2항 제6호 신설 등)

- 단기금융업무(발행어음) 인가 시 금융투자업자 인가와 동일하게 단기금융업자의 인가요건에 본인의 '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'을 추가
  - (사회적 신용요건) 최근 3년간 금융관련법령, 공정거래법,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지 않을 것 등

## □ 시세조종 관련 몰수·추징 대상 확대(제447조의2)

- (기존) '시세조종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'은 반드시(필요적)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하는 반면, 시세조종을 위해 제공된 재산(시드머니)에 대해서는 임의적 몰수·추징 대상으로 규정
  - 법원이 법 위반행위의 경중, 부당이득 규모 등 여러 요소를 감안하여 몰수·추징 여부를 재량적으로 판단
- (개정) 시세조종에 따른 부당이득에 더해 '시세조종행위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'까지 몰수 또는 추징이 가능하도록 함
  - 범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재산을 포함

## 나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(2021/6/18 개정 · 2021/6/30 시행)

### 1) 개정 이유

- 대주주에 대한 금융투자업자의 신용공여 허용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,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증권의 발행 한도를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함
  -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7805호, 2020. 12. 29. 공포, 2021. 6. 30. 시행)에 따른

### 2) 주요 내용

-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 현지법인 신용공여 허용(제38조 제2항~제4항, 제77조의5 제6항~제8항)
  - 해외현지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다른 해외현지법인에 대해서도 종합 금융투자사업자 등의 신용공여를 허용
    - (해외 현지법인의 범위) 현지 자법인뿐만 아니라, 그 현지법인이 100분의 50 이상 소유한 현지 손자법인에 대해서도 신용공여 가능
    - (신용공여 한도) 현지법인 전체에 대해서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자기자본의 100분의 40, 개별 법인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10까지 신용공여 가능
-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(제68조 제5항 제4의2호 신설)
  - 청약자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중복청약 사실을 확인하고도 청약자에게 주식을 배정하는 행위를 투자매매업자 등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추가
  - 동일한 투자자가 여러 건을 청약하더라도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건에 대해서만 배정이 이루어짐
    - 예) 투자자 A가 동일한 공모주에 대해 B증권사에 청약한 후 C증권사에도 청약하는 경우 먼저 접수된 B증권사에 대한 청약건만 공모주 배정
  - 증권사가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증권금융과 증권사의 청약자 개인정보 수집·활용근거 마련
    - 증권금융이 중복청약 확인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·운영 중
-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모집 시 증권의 발행한도(제118조의15)
  -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최저자기자본 유지 여부를 회계연도 기준에서 월 기준으로 점검
    - (기존) 최저자기자본 충족여부 매 회계연도 말 기준, 퇴출 유예기간 1년
    - (개정) 최저자기자본 충족여부 매월 말 기준, 퇴출 유예기간 6개월로 단축
  -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증권(주식+채권)의 발행한도를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
    - 채권의 경우 기존 한도(연간 15억원)를 유지하되, 상환 금액만큼 한도가 복원되도록 하여 채권 발행한도도 실질적으로 완화
    - 예) 연초에 15억원 발행 후 상반기에 5억원 상환 → 하반기에 5억원 추가 발행가능

□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의 예외 등(제176조의9 제3항 제2호 신설)

- 유가증권시장 IPO 및 공모시 우리사주조합에 발행주식총수의 20% 의무배정
- 우리사주조합이 공모주를 20% 미만으로 배정받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는 경우, 그 미달분은 다른 투자자군에게 배정될 수 있도록 함
  - 예) IPO시 우리사주조합이 발행주식총수의 13%만 배정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잔여물량 7%(=20%-13%)를 일반청약자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배정

선임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fi.re.kr)

## 2.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 규정

가. 금융투자업규정 (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프로젝트투자 중소기업 지분제한 완화 등)

## 2.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 규정\*

### 가. 금융투자업규정 (2021/6/30 개정·시행)

#### 1) 개정 이유

-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프로젝트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대상사업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며, 프로젝트 투자 사업의 수익지분 중 중소기업의 비중을 현행 70%에서 50%로 완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함

#### 2) 주요 내용

-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프로젝트투자 대상사업 확대를 위한 시행령 개정 추진사항 반영(제1-9조)
  - 프로젝트투자 대상사업의 범위를 온라인소액투자 발행가능업종과 동일하게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, 「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」을 준용하여 프로젝트투자가 가능한 분야의 범위를 제한하는 해당항을 삭제
-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프로젝트투자 중소기업 지분제한 완화(제1-9조)
  -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프로젝트투자사업의 수익지분 중 중소기업 비중을 70%에서 50%로 완화
- 투자일임업자 및 신탁업자의 자료제출에 관한 규정 삭제(제3-66조)
  - 투자일임업 및 신탁업의 통계조사 및 분석을 위한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을 법령상 위임 없이 금융투자협회가 정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

선임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fi.re.kr)

\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### 3. 한국거래소 규정

- 가.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(소액채권전담회원 매수호가 수량한도 확대 등)
- 나.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(유로스톡스50선물 호가가격단위 변경)
- 다.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(장외파생상품 계약의 축약제도 신설근거 및 절차 마련)
- 라.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(장외파생 공동기금 산출방법의 명확화)
- 마.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(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상 회원 범위 확대 등)
- 바. 금리·통화·일반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(시장조성상품간 연계하여 시장조성업무 부여 등)

## 3. 한국거래소 규정\*

### 가.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(2021/6/8 개정 · 2021/6/14 시행)

#### 1) 개정 이유

- 소액채권시장 운영의 안정성 제고 및 첨가소화채권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소액채권전담회원의 호가수량 한도 및 지정 제도를 개선하고, 채권시장조성회원의 조성호가 제출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조문 상의 불분명한 표현을 정비하기 위함

#### 2) 주요 내용

- 소액채권전담회원 매수호가 수량한도 확대(제14조 제1항 제4호 다목)
  - 소액채권전담회원의 종류별매수호가 수량한도를 기존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상향
- 소액채권전담회원 지정한도 확대 근거 신설(제62조 제2항)
  -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액채권전담회원 수를 현행 24개사에서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세칙 상 근거 마련
- 조성실적 평가 관련 자구 정비([별표 4] 2.나.(2))
  - 채권시장조성회원의 조성호가 제출실적 평가관련 산식 및 자구 명확화

\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## 나.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(2021/6/7 개정 · 2021/6/21 시행)

### 1) 개정 이유

- Eurex의 유로스톡스50선물 호가가격단위 변경(2021. 6. 21)에 맞춰 본소 유로스톡스50선물의 호가가격단위도 동일하게 변경함으로써 투자자들의 거래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함

### 2) 주요 내용

- 유로스톡스50선물 호가가격단위 변경(제4조의9)
  -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2조에 따른 주가지수선물거래의 호가가격단위에서 해외지수선물거래의 경우 (기준) 1포인트 → (개정) 0.5 포인트로 변경

## 다.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(2021/6/9 개정 · 시행)<sup>1)</sup>

### 1) 개정 이유

- 장외파생상품 청산잔고 급증에 따른 청산회원의 포지션 감축 수요 충족 및 청산결제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축약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

### 2) 주요 내용

- 장외파생상품 계약의 축약제도 신설 근거 및 절차 마련(제98조)
  - 청산약정거래의 내용을 변경(계약변경)하고자 하는 경우 거래소에 계약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, 계약변경은 다음과 같이 구분
    - 축약: 복수의 청산약정거래를 대상으로 계약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계약의 종료 및 계약금액 등의 변경을 통하여 기존 청산약정거래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
    - 조기종료: 단일 청산약정거래를 대상으로 계약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계약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거래를 종료하는 것
    - 당사자변경: 청산약정거래에 대한 거래소의 일방 당사자를 변경하는 것
  - 축약 신청일, 신청시간, 신청방법, 요건 및 접수 · 등록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함

1) 이 규정은 거래소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 및 회원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의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

## 라.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(2021/6/3 개정 · 2021/6/4 시행)

### 1) 개정 이유

- 장외파생상품의 위기상황분석(Stress testing)을 통한 손해배상공동기금 산출 과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

### 2) 주요 내용

#### □ 장외파생 공동기금 산출방법의 명확화(별표 1)

- 공동기금 총적립액 산출시 필요한 세부 절차를 단계별로 기술하여 시장참가자의 이해도를 제고
  - 청산회원별 위험노출액 산출 → 청산회원별 총증거금초과위험상당액 산출 → 최대 2개사 기준 총증거금초과위험상당액의 합계액 산출 → 공동기금 총적립액 산출
- 공동기금 총적립액 산출을 위한 다양한 위기상황분석(Stress testing) 방법론의 적용 근거 및 방식 구체화
  - ‘최대 2개사 기준 총증거금초과위험상당액의 합계액’을 각 위기상황분석 방법별로 산출하고 이중 최고치를 적용해 장외파생 공동기금 총적립액 산출
- 청산회원과 그 관계회사인 청산회원의 위험액 구분단계 명시
  - ‘최대 2개사 기준 총증거금초과위험상당액의 합계액’ 산출 전 위험노출액, 총증거금초과위험상당액은 개별 청산회원 단위로 산출

## 마.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(2021/6/22 개정 · 시행)

### 1) 개정 이유

-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에 거래중개회원이 신규 도입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

### 2) 주요 내용

#### □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상 ‘회원’ 범위 확대

-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개정사항을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에 반영하고자 함(제2조 제5항 및 제7항)
- 규율위원회 위원 자격(제22조 제2항), 분쟁조정 심의위원회 위원 자격(제39조 제2항) 관련 조항에 개정사항 반영

□ 배출권 이월 남용 제재를 위한 근거규정 신설(제3조 제1항 제13호)

- 배출권의 이월 외에 계획기간 내의 다음 이행연도 또는 다음 계획기간의 최초 이행연도로 배출권을 이월할 목적으로 거래를 하는 행위를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로 금지

## 바. 금리·통화·일반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(2021/6/18 제정·2021/6/21 시행)

### 1) 제정 이유

- 금리·통화·일반파생상품의 시장조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함

### 2) 주요 내용

□ 시장조성상품 선정 기준(제4조)

- 매년 4월에 직전 1년간의 거래대금 및 동일유형 상품 총거래대금 대비 비중 등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의 시장조성 상품을 선정
  - 거래소는 선정된 시장조성상품을 각 시장조성자에게 통보

#### 〈시장조성상품 선정 요건〉

- ① 선물상품의 거래대금이 300조원 미만이고 금리·통화·일반파생상품시장 선물상품 총거래대금 대비 비중 5% 미만
- ② 신규로 상장하는 상품
- ③ 거래대금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선물상품의 특정종목에 유동성공급이 필요한 경우
- ④ 그 밖에 거래소가 유동성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□ 시장조성자 선정·퇴출 요건(별표 1)

- 거래소는 필요시 시장조성자 모집공고 및 평가를 거쳐 신규 시장조성자를 선정
  - 기존 시장조성자는 다음 연도의 시장조성자로 재선정하되, 세칙 제80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정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등에 재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

- (세칙 제80조 제1항 제4호 나목) 시장조성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본시장 관계법규 및 거래소의 업무관련규정을 위반하여 형사제재를 받거나 과징금, 영업정지, 거래정지 또는 회원제재금(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)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
  
- 시장조성계약 체결·해지에 관한 사항(제7조, 제14조 및 별지 제2호 서식)
  - 거래소는 시장조성자로 선정된 자와 1년간 시장조성계약을 체결
    - 다만, 시장조성자가 일정 점수 이상의 벌점(시장조성의무를 미이행하는 경우)을 부과 받는 등 시장조성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계약을 해지
  
- 시장조성상품간 연계하여 시장조성의무 부여(제9조)
  - 거래소가 거래 활성화 여건, 상품특성, 정책목적, 그 밖에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계약으로 시장조성상품간 연계하여 시장조성의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 명시
  
- 시장조성호가 제출방법(제10조, 별표3)
  - 시장조성자에게 계약에 따른 시장조성호가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, 필요시 의무를 면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근거 명시
  
- 시장조성자 평가 및 시장조성대가 지급에 관한 사항(제11조, 제12조, 제13조 및 별표 4)
  - 시장조성자에 대한 평가방법 및 평가에 따른 대가지급 의무 명시
    - 시장조성자의 의무이행 평가결과 등은 홈페이지에 공개
  - 시장조성자 평가 결과에 따른 벌점 부과 기준 명시
  
- 시장조성 관련 자료의 제출 및 보관 의무(제15조)
  - 거래소가 시장조성거래에 대한 시장조성자의 계약의 이행 및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, 시장조성실적의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조성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명시
  - 시장조성자의 시장조성 관련 자료 보관기간을 5년으로 규정

선임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

## 4. 금융투자협회 규정

- 가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(보고대상 정보 중 전문투자자 지정번호 삭제 등)
- 나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(신용공여내역 보고 서식 정비)
- 다.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(증권사 주관사 업무 제한 완화 등)
- 라.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 (기관투자자 신주배정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등)
- 마.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(신탁업자의 감시업무 관련 책임범위 명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)
- 바.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(크라우드펀딩 발행한도 확대)

## 4. 금융투자협회 규정\*

### 가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(2021/6/17 개정 · 2021/6/18 시행)

#### 1) 개정 이유

- 협회의 개인투자자 지정현황 정보 중 '지정내역' 정보의 경우 신용정보법 위반 가능성이 있어 이를 제거하고, 정보 취합 목적 달성을 위해 보고대상 정보 범위에 대한 개선을 위함
  - 협회는 개인전문투자자 지정현황 정보를 증권사로부터 보고받아 이를 통계작성에 활용 중
    - 지정현황 정보에는 i) 지정내역(지정번호, 지정일자 · 효력기간, 지정요건), ii) 지정통계(요건별 당월 신규 · 말소 및 당월 말 건수)이 있음
  - '지정 내역'정보의 경우 증권사의 제3자(협회) 제공 · 활용 동의 시 필수적 동의 사항으로 운영중이나, 이는 신용정보법 위반 소지가 있음

#### 2) 주요 내용

- 보고대상 정보 중 '전문투자자 지정번호' 삭제 등(제2-13조의2 제3항)
  - 신용정보주체를 특정 할 수 있는 지정번호를 삭제 → 취합 정보(지정일자, 유효기간, 지정요건)의 신용정보법 적용 배제
    - 지정번호 구성 : 회사코드(###)-지정일자(YYYYMMDD)-순번(####)
  - 위에 따라, 증권사의 제3자 제공 · 활용 동의 관련 절차도 삭제

\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### 3) 관련 규정 개정

-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(2021/6/18 개정 · 시행)
  - 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」 개정(2021.6.17)의 후속 조치로 개인전문투자자 지정현황 보고서 개정
  - 개인전문투자자 지정현황 보고서 개정(별지 제64호)
    - 지정현황 보고서상 '지정번호' 관련 사항 삭제
    - i) 지정 내역(지정번호, 일자/유효기간, 요건), ii) 지정 통계(요건별 투자자 수)
  - 지정 내역의 경우 자료 제출 방법을 '파일 제출' 방식으로 단일화
    - 제출 정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직접 입력 차단(정정 시 지정내역 삭제 후 재제출)

### 나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(2021/6/3 개정 · 시행)

#### 1) 개정 이유

- 투자매매 · 중개업자의 신용공여 한도 및 계산방식과 관련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(2021.4.6)에 따라, 신용공여내역 보고 서식 정비하기 위함

#### 2) 주요 내용

- 매일 협회에 제출하는 '신용공여 내역' 중 '4. 총 신용공여 내역' 서식 정비(별지 제35호)
  - 신용공여 종류별 한도 및 계산방식을 금융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금투업규정(제4-23조 제1항)이 개정

## 〈신용공여 한도규제 관련 개선(금융위 보도자료(2021. 4. 15))〉

○ 종전 '신용공여' 한도규제는 '신용용자(증권담보용자 등 포함)'와 '신용대주' 금액을 합산하여 증권사 자기 자본의 100% 이내로 제한하고 있었음(자본시장법 제72조, 금융투자업규정 제4-23조)

※ 신용용자와 신용대주를 합산하여 총 한도를 적용함에 따라 증권사는 마진이 높은 신용용자에 집중하고, 증권사의 개인대주 참여 유인이 낮아지는 문제 존재

○ 금투업규정 개정(2021. 4. 6)으로 '신용용자'와 '신용대주'를 구분하여 한도와 그 계산방식을 설정(각각 자기자본의 95%, 5%)

- 한도 계산시에는 신용용자 · 신용대주 동시 취급에 따른 위험분산 효과를 반영하여 신용대주 금액의 1/2만큼 각각 차감적용

\* (위험분산효과)신용용자는 주가하락시, 개인대주는 주가상승시 채무불이행 위험이 증가

$$\text{신용용자 금액} - 1/2 \times \text{신용대주 금액} \leq \text{자기자본의 95\%}$$

$$\text{신용대주 금액} - 1/2 \times \text{신용대주 금액} \leq \text{자기자본의 5\%}$$

- 단, 신용용자 규모가 자기자본 90% 이하인 증권사는 종전 단순 합산 방식에 따른 계산도 가능

- 시행일(2021. 5. 3) 기준 총 신용공여(신용대주 제외) 규모 95% 초과 회사는 1개월 이내 준수 필요

▷ 제도개선에 따라 증권사는 신용대주를 많이 취급할수록 신용용자 한도도 늘어나는 계산방식을 적용받게 됨

— 이와 관련, 협회에 매일 제출하고 있는 신용공여 내역 보고 서식을 정비

- 투자매매 · 중개업자에는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일 신용공여 상황을 협회에 제출하도록 의무 부과(금투업규정 제4-34조 제1항)

— 금융투자회사는 신용공여 종류별 한도 및 계산방식을 분기별(업무보고서 제출시기)로 정하여 제출하도록 의무조항 신설

## 다.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(2021/6/17 개정 · 2021/6/20 시행)<sup>1)</sup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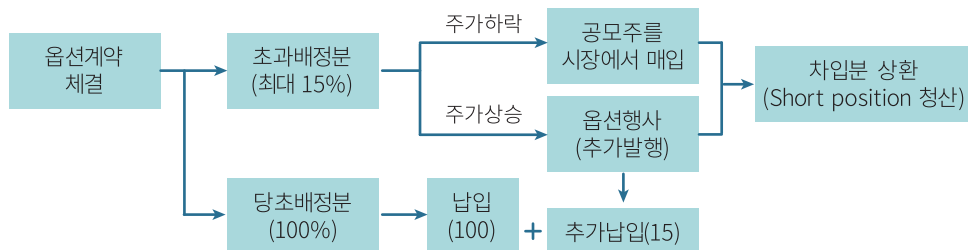
### 1) 개정 이유

- 금융위의 ‘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’(2021.2.1) 발표에 따른 인수 제도 개선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관리 강화를 위한 규제체계 마련 등을 위함

### 2) 주요 내용

- 증권사 주관사 업무 제한 완화(제6조 제1항, 제15조 제4항)
  - (기존) 증권사가 비상장기업에 5% 이상 투자하고 있는 경우 해당기업 IPO 주관이 제한
  - (개정) 증권사의 주관사 업무를 제한하고 있는 IPO 기업 지분율을 혁신기업에 한하여 10%로 상향
    - 이에 따라 이해관계인과 합하여 5% 이상 보유시 공동주관의무, 10% 이상 보유시 주관 금지 의무 또한 혁신기업의 경우 각각 5%씩 상향
  - (혁신기업 범위) 중소·벤처기업, 3년간 평균매출액 3,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, 그 외 기술력·성장성 등을 갖춘 기업(대기업 제외)
    - 조세특례제한법 상 신성장·원천기술 보유기업, 기술평가기관의 기술등급체계상 상위 100분의 50 이상의 평가를 받은 기업
- 초과배정옵션 제도 개선(제10조 제2항)
  - (기존) IPO 초과수요 해소 및 상장 후 주가안정을 위하여 초과배정옵션 제도를 도입·시행('02.8월)하고 있으나 활용 부진
    - (초과배정옵션 제도) IPO시 공모물량의 15% 범위 내에서 최대주주로부터 차입·확보한 공모주를 추가배정 후 시장매입 또는 신주발행을 통해 상환하는 제도

〈초과배정옵션 제도 개요〉



1) 우리사주조합 의무배정 예외 적용은 2021.6.20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적용, 하이일드펀드등에 대한 배정기준 적용은 2021.7.1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적용

- (개정) 상장 후 주관사가 시장수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장내 매수시 매수가격 완화
  - (기존) 공모가의 90% 이상 → (개정) 공모가의 80% 이상

## □ 우리사주조합 의무배정 예외 반영(제9조 제1항, 제2항)

- (기존) 자본시장법(제165조의7)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IPO시 우리사주조합에 20% 배정 의무화
  -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(2021.6.20)에 따라 의무배정 예외(우리사주조합이 20% 미만으로 배정받기를 희망하는 경우) 신설
- (개정) 자본시장법 상 우리사주조합 의무배정의 예외를 동일하게 적용

## □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관리 강화

- (기존)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(하이일드펀드등)에 대해 공모주 우선배정(공모주의 5%, 2023.12.31까지 적용) 의무가 적용되나,
  - 공모주 우선배정 의무가 적용되는 벤처기업투자신탁(이하 '코스닥벤처펀드')에 비해 관리체계 미흡
- (개정) 하이일드펀드등에 대해서도 코스닥벤처펀드에 준한 관리체계 마련
  - (배정기준 마련) 하이일드펀드등에 대한 배정시 공모펀드 우대 또는 순자산 규모 등을 고려한 배정기준 적용
  - (해지 제한) 설정·설립후 1년 이내 또는 공모주 배정 이후 3개월 이내(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서 계약 종료일 전 3개월은 적용 배제) 해지시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
  - 다만, 규정 개정일 이후 신규 가입자가 없는 펀드에 대해서는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 면제

## 라.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 (2021/6/17 개정 · 2021/6/20 시행)

### 1) 개정 이유

- 증권사의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강화를 위해 주관사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함
  - 금융위의 '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' 발표(2021. 2. 1)에 따름
- 증권사 간 통일된 업무처리를 통해 중복청약 금지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함
  - 금융위의 '기업공개(IPO)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'(2020. 11. 18)의 후속조치로 일반청약자의 중복청약을 금지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(2021. 6. 20)에 따름

## 2) 주요 내용

### □ 기관투자자 신주배정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

- (기존) 수요예측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기관투자자의 충실한 수요예측 참여 유도 및 상장 후 안정적 주가관리를 위한 수단 미흡
- (개정)기관투자자에 대한 신주배정과 관련하여 가격발견·주가안정 기여도를 감안하여 배정하도록 주관사의 책임 강화
  - 가격발견 기여도가 낮은 기관투자자에 대해 배정물량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하고, 장기보유 확약 등 중·장기 투자성향의 투자자에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권고

### □ 중복청약 금지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

- (일반청약자별 중복여부 확인기준) 일반청약자의 중복청약 여부 확인을 위한 일반청약자 종류별 식별정보 기준 마련

구분	중복여부 확인기준 식별정보
개인 (내국인 및 재외국민)	주민등록번호
법인 등	사업자등록번호, 고유번호
외국인	외국인등록번호
	투자등록번호 * 비거주자로서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
	국내거소신고번호 * 외국국적동포로서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

- (중복청약 발생시 처리기준) 동일 일반청약자의 중복청약 발생시 시간순으로 가장 우선한 청약만을 적격 청약으로 하고, 나머지는 부적격 청약으로 통보하되,
  - 동일한 시간에 중복청약이 이루어지거나, 전산 등의 문제로 청약시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①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큰 순, ② 청약건수 적은 회사 순으로 순차적으로 적용
- (투자자 안내)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 금지 관련 사항을 주지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안내
  - 중복청약 시 적격 청약을 제외한 나머지 청약에 대해서는 공모주식이 배정되지 않는다는 점
  - 상기 청약자 식별 번호 외의 번호(여권번호 등)로 개설된 계좌의 경우 중복청약 여부 확인이 곤란하여 청약이 불가하다는 점

### □ 협회 모범기준 및 가이드라인 정비차원에서 기재정원 환매청구권(Putback option) 업무처리 가이드라인(201제정) 내용을 동 모범기준에 이관

- 내용은 동일하나 금번 중복청약 금지 가이드라인이 인수회사에도 준용됨에 따라 별도 모범규준으로 운영되던 동 가이드라인을 통합

- 현행 기준 명칭을「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」으로 변경하고 인수회사 청약업무와 관련한 별도의 장을 마련하여 중복청약금지 및 환매청구권 관련 내용을 포함

## 마.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(2021/6/1 제정 · 2021/6/28 시행)

### 1) 제정 이유

- 신탁업자의 감시업무 관련 책임범위 명확화를 위해 법령 및 행정지도, 금감원의 사모펀드 수탁업무 점검내용, 업계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정
  - 최근 사모펀드 부실사태 재발방지 방안의 일환으로 사모펀드에 대한 신탁업자의 감시업무가 도입
    - ‘사모펀드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행정지도’(2020.8.12), 자본시장법 개정(2021.10.21. 시행)

### 2) 주요 내용

- 인적·물적 요건
  - 법령 등에서 규정한 전문인력 및 수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·보안설비 등의 구축 의무를 규정
    - 2인 이상의 준법감시전문인력, 2인 이상의 집합투자재산 계산 전문인력
- 재위탁시 법률관계
  - 원칙적으로 최초 신탁업자가 감시기증을 수행하고 재위탁기관은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 의무 이행
    - 최초로 수탁한 PBS가 수탁업무를 재위탁할 경우 원칙적으로 PBS에 감시의무가 있고, 재위탁한 기관은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 감시의무 이행
- 집합투자재산 보관·관리
  - (업무범위)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 등에 대한 집합투자재산 보관·관리 업무 범위 명시
    - ① 집합투자재산 보관·관리, ②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이행, ③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 환매대금 등 지급, ④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등
  - (이행방법) 운용사의 집합투자재산 보관·관리에 관한 업무지시는 한국예탁결제원 전산시스템을 원칙으로 함
    - 예탁 불가능한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 신탁업자는 자산의 실재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서(주식미발행확인서, 주주명부, 채권인수 계약서, 부동산 등기서류 등)로 별도 관리 가능
  - (자산내역 대사) 매분기말 운용사(일반사무관리사)와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의 자산보유내역을 비교하여 잇아 유무 점검 및 증빙자료 보관
    - 원칙적으로 예탁원 전산시스템을 통해 자산내역 대사업무 수행

## □ 운용행위 감시·확인 업무

- (대상 펀드) 공모펀드 및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
  -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는 운용행위 감시의무에서 제외
- (감시범위) 자산의 취득·처분, 보관·관리 지시를 이행한 후 지시내용의 법령·규약·투자설명자료 위반여부를 확인
  - 규약상 투자대상자산별 투자한도, 법령상 운용제한사항 등의 위반 여부
- (수행절차) 감시업무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구축된 감시업무시스템에 따라 감시업무 수행 후 위반사항 시정요구 등 조치
  - 감시업무 수행을 위해 운용사 등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, 운용사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 불가

## 바.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(2021/6/30 개정·시행)

### 1) 개정 이유

- 금융위 보도자료 ‘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’(2020. 6)의 후속조치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(2021.6.18 개정, 2021.6.30부로 시행)에 따른 표준업무방법서 정비를 위함

### 2) 주요 내용

#### □ 크라우드펀딩 발행한도 확대

- (기존) 연간 발행한도가 15억원
- (개정) 연간 30억원으로 확대하되, 채권의 경우 15억원 한도 유지(상환시 상환금액만큼 한도 복원)
  - 개정 시행령 제118조의15

선임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